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20-52 호

2020년 10월 15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3232호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233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1호	2020년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2호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3호	2019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2차)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4호	2020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5호	구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6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7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8호	광양 옥룡 덕천지구 산곡(전원) 마을 조성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9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 및 재발령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40호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44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47호	복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51호	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10호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4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5호	기본측량실시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9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3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공고 제2020-1559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근린공원/목재문화체험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여수시 고시 제2020-40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0-410호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순천시 고시 제2020-209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0-353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0-35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0-356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35호선 등 5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0-143호	영암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영암군 공고 제2020-1483호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0-1484호	영암 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완도군 고시 제2020-385호	완도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32호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33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 제6호”를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43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제43조제4항”을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를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에서”를 “각 호에서”로, “70%”를 “70퍼센트”로, “각 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66㎡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 포함)이 70%이상”을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7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66㎡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 포함)이 70%이상”을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85㎡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 포함)이 70%이상”을 “85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1호

2020년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2020년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강진군	강진 제2일반산업단	일반	354	269	강진군	추가
고흥군	무인항공 영농기술	농공	135	90	고흥군	추가
보성군	제2조성	농공	50	42	보성군	추가
해남군	땅끝해남식품 특화제2	농공	229	138	해남군	추가
영광군	대마화평	농공	47	34	(유)광산산업개발	추가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2호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 고시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취락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2	반생	자연취락지구	신북면 월평리 삼포천 남측	-	20,400	3,515	23,915	2000.1.20.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2	반생	◦ 취락지구 변경 - 증) 3,515㎡	•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취락지구 편입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3호

2019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2차) 고시

2019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착수지구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목적 : 평야부 우량농지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시설계량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2. 사업의 내용 : 저류지(둑병), 배수로, 농로 포장 등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	리동						
1지구				118		3,029			
육암	신안	임자	이흑암	118.0	저류지 : 3개소 용수로 : 4.374km 배수로 : 1.535km 농 로 : 0.410km	3,029	' 20. 10. 15. ~ ' 21. 12. 31.	신안군수	

3. 사업의 효과 :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 경쟁력 제고
4. 관련 서류 열람 장소 : 신안군 건설과(061-240-8476)
5. 지구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다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권 리 자	
	시군	면	리	번지				주 소	성 명
계				11필지		24,987	24,987		
1	신안	임자	이흑암	979-8	답	3,000	3,00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514 대주파크빌 104-1305	유재철
2	신안	임자	이흑암	979-9	답	3,000	3,000	전라남도 신안군 임지면 이흑암리 811	안승임
3	신안	임자	이흑암	980-3	답	2,144	2,144	전라남도 신안군 임지면 임자로 148-2	주현호
4	신안	임자	이흑암	980-4	답	2,625	2,625	전라남도 신안군 임지면 임자로 148-2	주현호
5	신안	임자	이흑암	980-7	답	1,750	1,750	전라남도 신안군 임지면 이흑암리 918	안찬섭
6	신안	임자	이흑암	980-8	답	2,721	2,721	전라남도 신안군 임지면 이흑암리 837	정광진
7	신안	임자	이흑암	980-9	답	1,124	1,124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27-3 현대빌라 가-402	정연식
8	신안	임자	이흑암	982-5	답	1,789	1,789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27-3 현대빌라 가-402	정연식
9	신안	임자	이흑암	982-6	답	2,803	2,803	전라남도 신안군 임지면 이흑암리 152	김종엽
10	신안	임자	이흑암	996-3	답	2,913	2,913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41-3 해맞이타운 나-301	성정오
11	신안	임자	이흑암	996-4	답	1,118	1,118	전라남도 신안군 임지면 이흑암리 925	강태득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4호

2020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0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착수지구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목적 : 평야부 우량농지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시설계량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2. 사업의 내용 : 저류지(둑병), 배수로, 농로 포장 등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	리동						
2지구				187		4,159			
용산	장성	진원	용산 상림	120	용수로 : 4.044km 배수로 : 2.680km	2,439	' 20. 10. 15. ~ ' 21. 12. 31.	장성군수	
오류	진도	지산	오류	67	용수로 : 2.174km 배수로 : 1.717km 농 로 : 0.177km	1,720	' 20. 10. 15. ~ ' 21. 5. 31.	한국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3. 사업의 효과 :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 경쟁력 제고
4. 관련 서류 열람 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488)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061-540-5453)
5. 지구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해당없음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5호

구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고시

구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구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구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구례군청 안전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안전도시과(061-78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3,137,220	-	443,137,220	100.00	
도 시 지 역		10,906,000	-	10,906,000	2.46	
주 거 지 역	소 계	2,279,405	증) 625	2,280,030	0.51	
	1종일반주거지역	1,613,071	증) 625	1,613,696	0.36	
	2종일반주거지역	596,416	-	596,416	0.14	
	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69,918	-	69,918	0.01	
상 업 지 역	소 계	347,600	-	347,600	0.08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7,600	-	347,600	0.08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 계	164,359	-	164,359	0.04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64,359	-	164,359	0.04	
녹 지 지 역	소 계	8,114,636	감) 625	8,114,011	1.83	
	보전녹지지역	830,500	-	830,500	0.19	
	자연녹지지역	4,536,711	감) 625	4,536,086	1.02	
	생산녹지지역	2,747,425	-	2,747,425	0.62	
비 도 시 지 역		432,231,220	-	432,231,220	97.54	
관 리 지 역	소 계	98,368,447	증) 1,144,562	99,513,009	22.45	
	계획관리지역	41,657,717	증) 145,553	41,803,270	9.43	
	생산관리지역	15,643,750	증) 524,251	16,168,001	3.65	
	보전관리지역	41,066,980	증) 474,758	41,541,738	9.37	
농 립 지 역		240,462,863	감) 1,144,562	239,318,301	54.01	
자연환경보전지역		93,399,910	-	93,399,910	21.08	

※ 기정면적 : 구례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0-34호(2020.01.3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개소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1,145,187	130	-	-
-	구례읍 백련리 468-2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25	1	200% 이하	○ 현재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구례 군 관리 계획(재정비) 전고 제2017-147호 에서 인접 공원으로 착오 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474,758	36	80% 이하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 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 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한 지역은 보 전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524,251	43	80% 이하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 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 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45,553	50	100% 이하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 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 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 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시지역

연번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	구례읍 백련리 468-2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25	200%	· 현재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구 례 군관리 계획(재정비) 전고 제2017-147호에서 인접 공원으로 착오 결정되어 주민의 재산 권 보호를 위해 종전의 용도지 역으로 변경

■ 비도시지역

연번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남원069-3	산동면 원달리 477-2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3	100%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계획적·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2	남원069-6	산동면 원달리 629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94	100%	
3	남원069-7	산동면 원달리 115답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692	100%	
4	남원069-8	산동면 원달리 632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2	100%	
5	남원069-10	산동면 내산리 480-1임, 480-4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086	80%	
6	남원078-2	산동면 계천리 1194-1천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661	80%	
7	남원078-4	산동면 내산리 690답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014	100%	
				보전관리지역	10,160	80%	
8	남원078-5	산동면 내산리 685대, 686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997	100%	
9	남원078-10	산동면 원촌리 35-5도, 849-5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037	100%	
10	남원078-11	산동면 외산리 223답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8,006	80%	
11	남원087-2	산동면 이평리 334-5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80	100%	
12	남원087-1-②	산동면 이평리 214-4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1,234	80%	
13	남원088-1	산동면 신학리 84-1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919	80%	
14	남원088-3	산동면 외산리 442전, 441-4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76	100%	
15	남원088-5	산동면 외산리 467-4도, 711-8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0	100%	
16	남원088-8	광의면 온당리 421답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2,902	80%	
17	남원088-1-②	산동면 이평리 67-1답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7,510	80%	
18	남원097-1	용방면 죽정리 944구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334	80%	
19	남원097-3	용방면 죽정리 737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65	80%	
20	남원097-5	용방면 죽정리 739-2답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6	100%	
21	남원097-6	용방면 죽정리 511-4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67	100%	
22	남원097-7	용방면 죽정리 515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595	100%	
23	남원097-19	용방면 신도리 920-1대, 920-2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85	100%	
24	남원097-20	용방면 신도리 967-19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94	100%	
25	남원097-21	용방면 신도리 1245-12구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407	80%	

연번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26	남원097-22	용방면 신도리 632전, 631목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736	100%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계획적·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27	남원097-25	용방면 죽정리 674-1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177	80%	
28	남원097-1-②	용방면 죽정리 746-3답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390	80%	
29	남원097-2-②	용방면 죽정리 733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556	80%	
30	남원097-3-②	용방면 죽정리 716답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893	100%	
31	남원098-5	광의면 구만리 166-7도, 372-5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3	100%	
32	남원098-7	광의면 온당리 1135-4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26	80%	
33	남원098-14	광의면 온당리 164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812	80%	
34	남원098-21	용방면 신도리 1110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1	100%	
35	남원098-23	용방면 신도리 244-62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0	100%	
36	남원098-26	용방면 신지리 861-7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05	100%	
37	남원098-27	용방면 신지리 861-7도, 861-38답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7	100%	
38	남원098-35	광의면 구만리 313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6,447	80%	
39	남원099-1	광의면 온당리 213-2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443	100%	
40	남원099-2	광의면 대전리 79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7,500	80%	
41	남원099-4	광의면 방광리 875-2답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238	80%	
42	남원099-5	광의면 방광리 914구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345	80%	
43	남원099-7	광의면 방광리 748-6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916	100%	
				생산관리지역	1,685	80%	
44	구례008-2	용방면 용정리 344-1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708	100%	
45	구례008-4	용방면 중방리 산50-15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	80%	
46	구례008-10	용방면 용정리 산71-1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95	80%	
47	구례008-12	용방면 용강리 산1-33임, 산1-34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9	80%	
48	구례008-16	용방면 용강리 산1-37임, 산1-38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358	80%	
49	구례008-17	용방면 용강리 산10-3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25	80%	
50	구례008-24	용방면 용강리 산9-10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8,806	80%	
51	구례008-25	용방면 용강리 745-16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51	80%	

연번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52	구례008-26	용방면 용강리 707-14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62	80%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계획적·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53	구례008-27	용방면 용강리 707-9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11	80%	
54	구례008-28	용방면 신지리 435-2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224	100%	
55	구례008-29	광의면 대신리 851-10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0,455	80%	
56	구례008-30	용방면 용정리 산71-29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134	80%	
57	구례008-31	용방면 용강리 산1-43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358	80%	
58	구례009-1	광의면 대신리 4-2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79	100%	
59	구례009-3	광의면 수월리 814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	100%	
60	구례009-4	광의면 수월리 890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60	100%	
61	구례009-6	광의면 수월리 564-74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610	100%	
62	구례009-16	마산면 갑산리 337-28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23	100%	
63	구례010-2	광의면 수월리 산43-6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6,755	80%	
				계획관리지역	53,682	100%	
64	구례010-4	마산면 갑산리 321-20답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68	80%	
				계획관리지역	5,285	100%	
65	구례010-5	마산면 갑산리 696구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788	100%	
66	구례019-1	용방면 사림리 646-2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0	100%	
67	구례019-2	용방면 사림리 5잡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143	80%	
68	구례020-6	마산면 광평리 238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450	80%	
69	구례020-7	마산면 사도리 1016-5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3,967	80%	
70	구례020-1-②	마산면 광평리 822-195잡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3,064	80%	
71	하동011-1	토지면 문수리 1040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419	80%	
72	하동011-2	마산면 사도리 355-2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692	80%	
73	하동011-3	토지면 용두리 43-1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514	80%	
74	하동011-9	토지면 오미리 440-30도, 438-2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6	100%	
75	하동011-10	토지면 오미리 311-14도, 314-24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185	100%	
76	하동011-11	토지면 문수리 1003-1단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601	80%	

연번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77	하동011-12	토지면 문수리 1062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6	80%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계획적·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78	하동012-1-②	토지면 구산리 438답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1,554	80%	
79	구례029-1	문척면 죽마리 563-1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08	80%	
80	구례029-3	문척면 죽마리 668-4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883	80%	
81	구례029-4	구례읍 원방리 14-3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051	80%	
82	구례029-11	구례읍 원방리 471-1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02	80%	
83	구례030-1	문척면 월전리 998-5답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4	80%	
84	구례030-2	문척면 월전리 1310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13	80%	
85	하동021-14	토지면 용두리 204-6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2,404	80%	
86	하동021-21	토지면 용두리 467-3도, 467-5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3	80%	
87	하동021-22	토지면 용두리 462-1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8	80%	
88	하동021-24	토지면 용두리 600-4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	100%	
89	하동021-26	토지면 금내리 587-5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78	100%	
90	하동021-27	토지면 금내리 754답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32	100%	
91	하동021-30	문척면 금정리 824-2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098	80%	
92	하동021-31	문척면 금정리 835-1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	100%	
93	하동021-32	문척면 금정리 752-2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681	80%	
94	하동021-33	문척면 금정리 753-5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2	80%	
95	하동021-1-②	토지면 용두리 467-6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667	80%	
96	하동022-1	토지면 오마리 576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282	100%	
97	하동022-7	토지면 파도리 820-1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5	100%	
98	하동022-13	토지면 파도리 410-4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582	80%	
99	하동022-18	토지면 파도리 256답, 1114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22	80%	
100	하동022-25	토지면 파도리 213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97	80%	
101	하동022-26	토지면 파도리 212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28	80%	
102	하동022-27	토지면 파도리 169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60	80%	
103	하동022-28	토지면 금내리 135-1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86	100%	
104	하동022-33	간전면 간문리 550-3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56	80%	
105	하동022-34	간전면 간문리 702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761	80%	

연번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06	하동022-35	간전면 간문리 498-1제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14	80%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계획적·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107	하동022-36	간전면 간문리 464-32제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967	80%	
108	하동022-37	간전면 간문리 454-1제, 454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28	80%	
109	하동022-38	간전면 간문리 464-25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15	80%	
110	하동022-50	간전면 간문리 3-4종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256	100%	
111	하동022-53	간전면 양천리 514-4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78	80%	
112	하동022-54	간전면 양천리 512-3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6	80%	
113	하동022-55	간전면 양천리 634-18도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394	80%	
114	하동022-1-②	문척면 금정리 12-1천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1,727	80%	
115	하동022-2-②	간전면 간문리 465-2전, 465-3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63	80%	
116	하동023-1	간전면 양천리 180-4제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8,852	80%	
117	하동023-2	간전면 양천리 238-3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	100%	
118	구례039-1	구례읍 원방리 149-15도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4,245	80%	
119	구례039-2	구례읍 원방리 392-1대, 393-1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03	100%	
120	하동032-9	간전면 수평리 736-14답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239	80%	
121	하동032-14	간전면 수평리 909-6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17	100%	
122	하동032-16	간전면 삼산리 328-1답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463	100%	
123	하동033-2	간전면 흥대리 700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5	80%	
124	하동042-7	간전면 효곡리 345전, 794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8	100%	
125	하동042-1-②	간전면 금산리 188-4제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0,259	80%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6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산림사업종류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취소 일자	등록취소 사유
유한회사 송산숲	정*은	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② 도시림등 조성	①전남2020-016 ②전남2020-017	전남 화순군	2020. 10. 12.	폐업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7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산림사업의 종 류	등 록 연월일	소 재 지
주식회사 숲 속	김*수	①전남2020-051 ②전남2020-052	①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②도시림등 조성	2020. 10. 12.	전남 영광군 영광읍 **로 157, 1층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8호

광양 옥룡 덕천지구 신규(전원) 마을 조성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신규(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명 칭 :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위 치
 - (당 초)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 산1-2번지 외 8필지
 - (변 경)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 산1-12번지 외 7필지
 - (확정측량)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 1109번지 외 33필지
- 면 적 : (당초) 21,232㎡(20세대) / (변경) 20,815.6㎡(20세대)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당 초) 5,299백만원(국비 840, 시비 360, 민자부담 4,099)
 - (변 경) 5,299백만원(국비 840, 시비 360, 민자부담 4,099)
- 사업기간 : (당초) 2014~2017 / (변경) 2014~2023
-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 도 로 L= 594m · 상수도 L= 699m · 하수도 (오수) L= 791m, (우수) L= 818m · 휴게공간, 주차장, 배수지	· 도 로 L= 566m · 상수도 L= 456m · 하수도 (오수) L= 551m, (우수) L= 526m · 휴게공간, 주차장, 구거, 가압장

3.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 및 시행방식

- 시행시간 : (당초) 2014. ~ 2017 / (변경) 2014. ~ 2023
- 시행방식 : 입주자주도형(변경없음)

4.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5.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및 구역조정 등 구역계 변경사항이 있어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의 변경 승인을 위한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마을정비구역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함.

6.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1,232	100.0	20,815.6	100.0	
주택용지		9,346	44.0	10,277.7	49.4	
공공용지	소 계	11,886	56.0	10,537.9	50.6	
	휴게공간	461	2.2	465.0	2.2	
	주차장	3,370	15.9	4,052.4	19.5	
	수도용지	516	2.4	580.7	2.8	
	도로	49	0.2	212.2	1.0	
	구거	-	-	348.9	1.7	
	녹지	7,490	35.3	4,878.7	23.4	

7.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1,232	감) 416.4	20,815.6	100.0	
보전관리지역	13,913	감) 265.9	13,647.1	65.5	
계획관리지역	7,319	감) 150.5	7,168.5	34.5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지역명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양시 옥룡면 울천리 산1-12번지 일원	보전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13,647.1	80% 이하	- 전원마을 조성사업 확정측량성고에 따라 보전관리 지역 결정(변경) 면적 조정
-	광양시 옥룡면 울천리 산1-12번지 일원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7,168.5	100% 이하	- 전원마을 조성사업 확정측량성고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 결정(변경) 면적 조정

8.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60	덕천	자연취락지구	옥룡면 울천리 덕천마을 일원	-	81,924	전남 306호 09.07.13	
변경	60	덕천	자연취락지구	옥룡면 울천리 덕천마을 일원	-	81,683		

○ 용도지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0	덕천지구	- 면적감소 81,924㎡ → 81,683㎡	-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의 선형 변경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구역조정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성명	주소	
합 계					79,494	21,232			
1	옥룡	울천	산1-2	임	16,863	14,524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	옥룡	울천	산1-5	임	198	198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3	옥룡	울천	668-1	전	2,757	88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4	옥룡	울천	689-1	전	3,227	3,227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5	옥룡	울천	689-4	전	33	33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6	옥룡	울천	741-1	답	3,002	2,693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7	옥룡	울천	748	대	370	37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8	옥룡	울천	1058	구	50,512	54	국토교통부		
9	옥룡	울천	1075	도	2,532	45	국토교통부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성명	주소	
합 계					20,865	20,865			
1	옥룡	울천	689-1	전	3,135	3,135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	옥룡	울천	689-4	전	33	33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성명	주소	
3	옥룡	울천	741-1	답	2,673	2,673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4	옥룡	울천	748	대	295	295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5	옥룡	울천	1058-1	구	54	54	국토교통부		
6	옥룡	울천	1075-1	도	45	45	국토교통부		
7	옥룡	울천	산1-5	임	198	198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8	옥룡	울천	산1-12	임	14,432	14,432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 확정측량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성명	주소	
합 계					20,815.6	20,815.6			
1	옥룡	울천	1083	대	821.2	821.2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	옥룡	울천	1084	대	706.0	706.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3	옥룡	울천	1085	공	184.6	184.6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4	옥룡	울천	1086	대	477.7	477.7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5	옥룡	울천	1087	대	477.7	477.7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6	옥룡	울천	1088	차	175.7	175.7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7	옥룡	울천	1089	대	465.0	465.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8	옥룡	울천	1090	대	481.3	481.3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9	옥룡	울천	1091	대	476.9	476.9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0	옥룡	울천	1092	대	497.3	497.3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1	옥룡	울천	1093	대	398.5	398.5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2	옥룡	울천	1094	대	442.1	442.1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3	옥룡	울천	1095	대	434.7	434.7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4	옥룡	울천	1096	대	435.4	435.4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5	옥룡	울천	1097	대	438.6	438.6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6	옥룡	울천	1098	대	478.7	478.7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7	옥룡	울천	1099	수	212.2	212.2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18	옥룡	울천	1100	차	135.0	135.0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19	옥룡	울천	1101	대	794.9	794.9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성명	주소	
20	옥룡	울천	1102	대	570.7	570.7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1	옥룡	울천	1103	차	270.0	270.0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22	옥룡	울천	1104	대	466.0	466.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3	옥룡	울천	1105	대	459.0	459.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4	옥룡	울천	1106	대	484.0	484.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5	옥룡	울천	1107	대	466.0	466.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6	옥룡	울천	1108	대	471.0	471.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27	옥룡	울천	1109	도	3,729.8	3,729.8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28	옥룡	울천	1110	도	261.1	261.1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29	옥룡	울천	1111	도	61.5	61.5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30	옥룡	울천	1112	공	791.4	791.4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31	옥룡	울천	1113	구	162.5	162.5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32	옥룡	울천	1114	공	2,001.7	2,001.7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33	옥룡	울천	1115	구	186.4	186.4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34	옥룡	울천	1116	공	1,901.0	1,901.0	김용수 외 19명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5	

10.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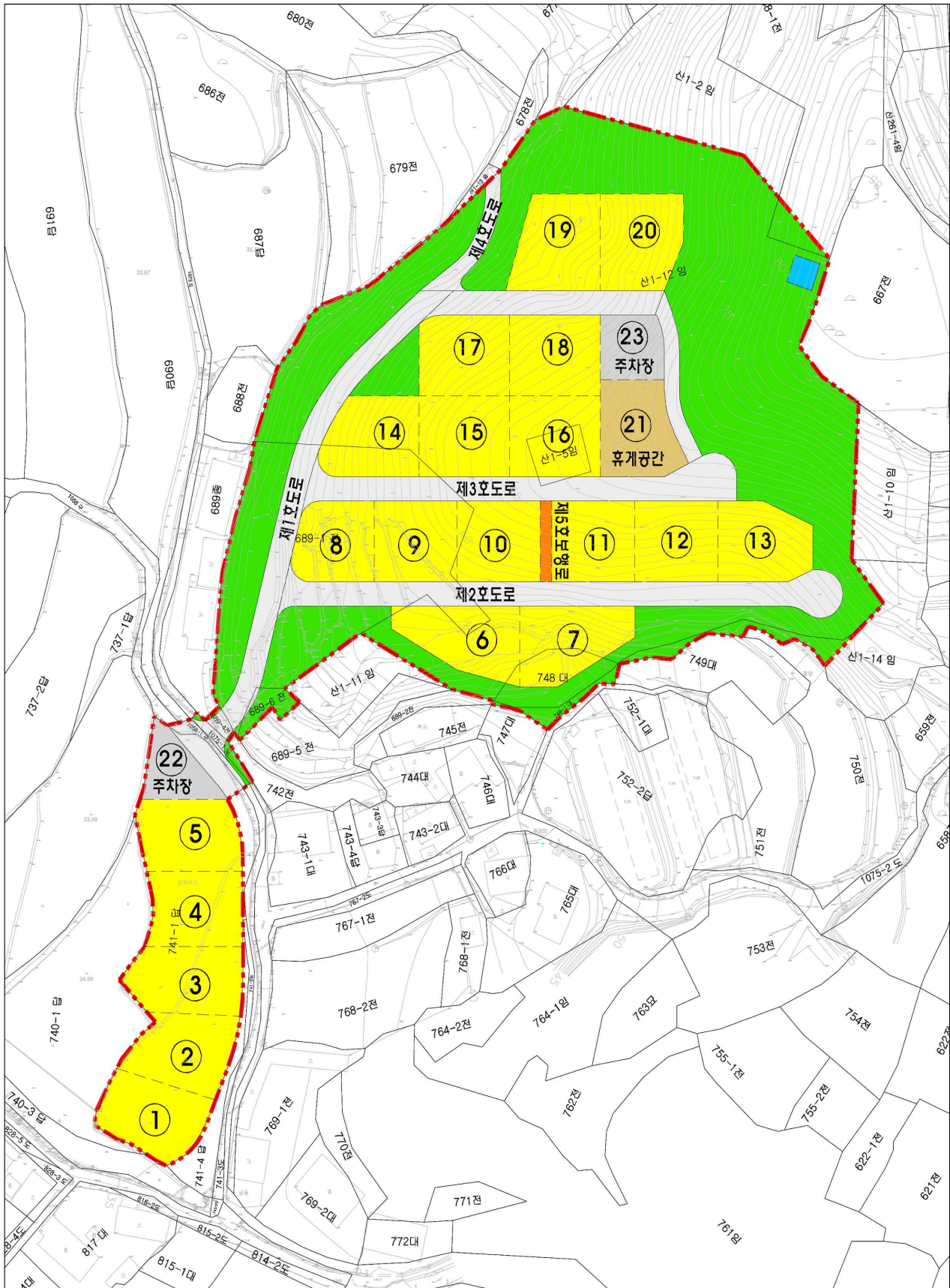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광양시 건설과 농촌개발팀(061-797-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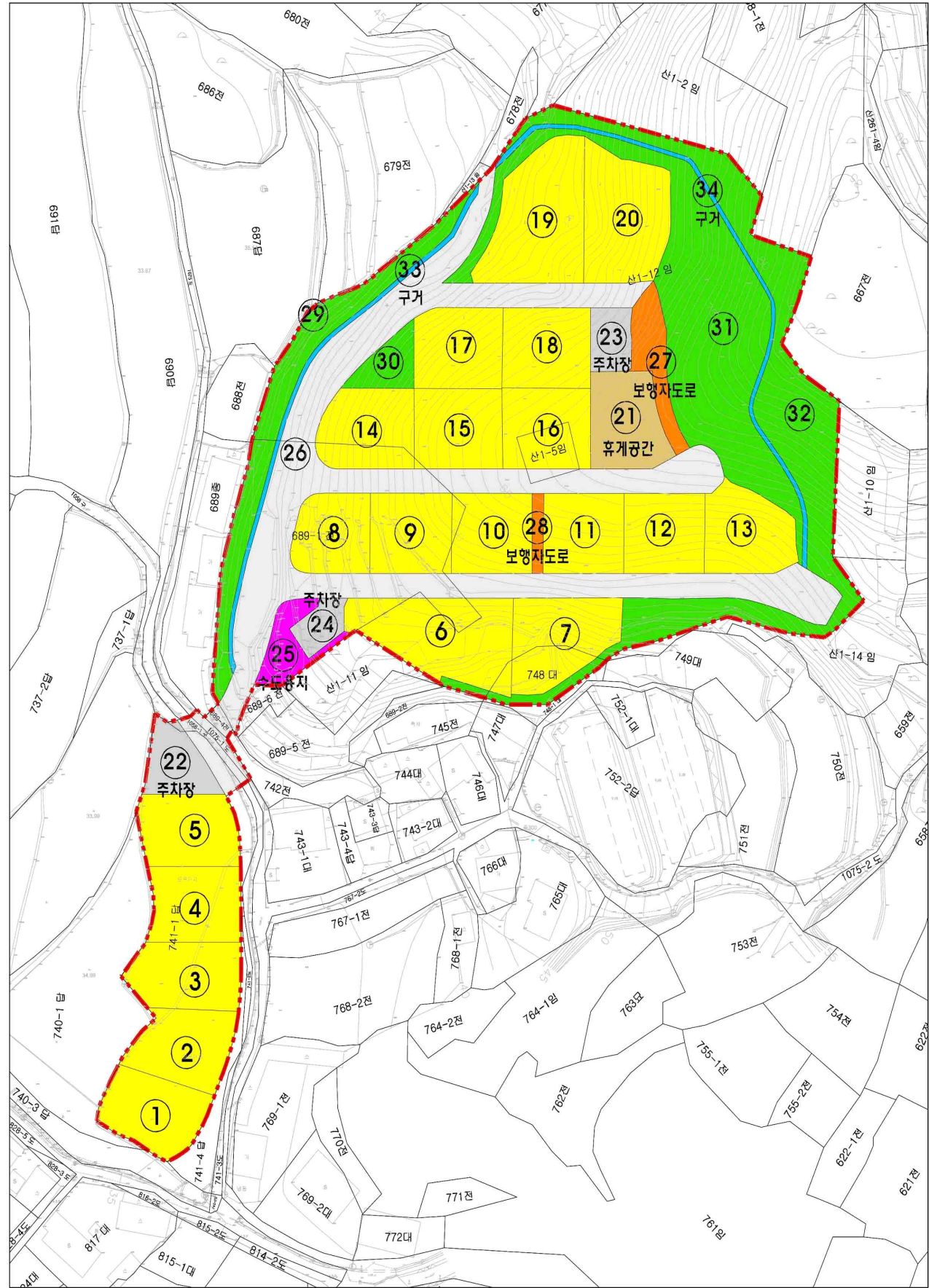
11.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계획도

○ 당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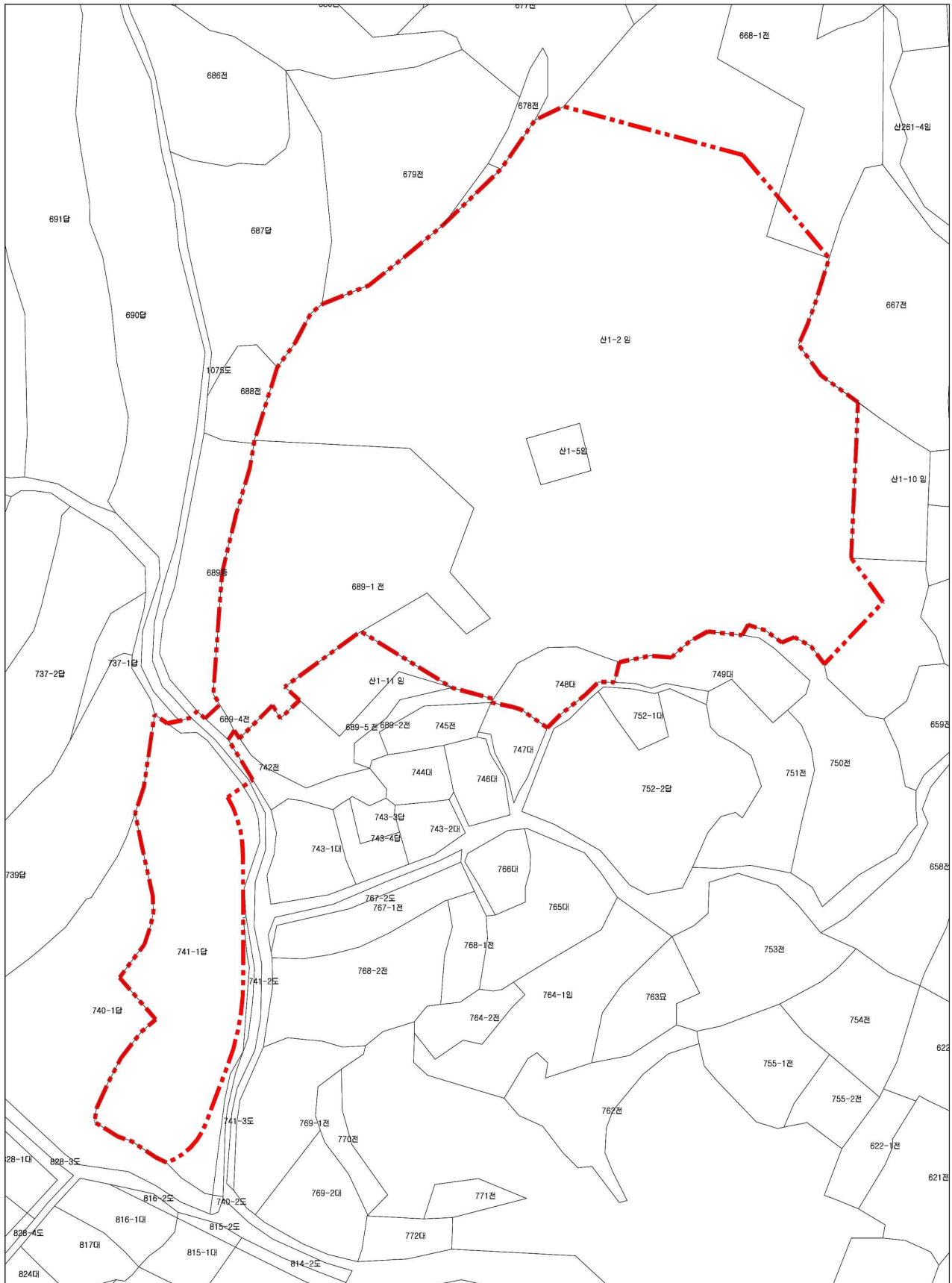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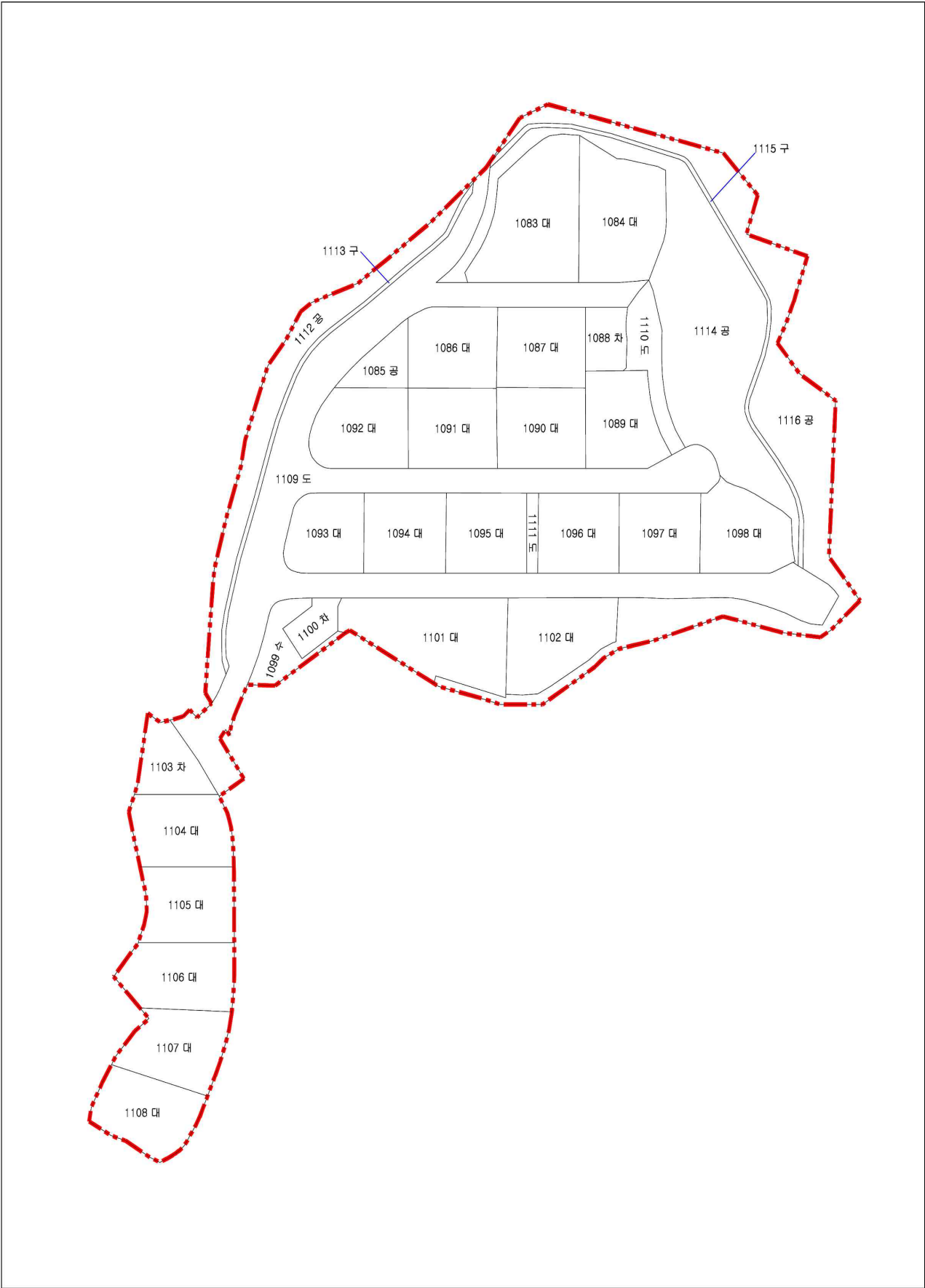


편입 용지도

○ 당 초



○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9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 및 재발령 고시

전라남도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마스크 착용 준수 위반’ 과태료 부과규정 개정 시행이 2020. 10. 13.(화)부터 적용됨에 따라 도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의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근 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2의2, 2의3, 2의4
3.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기 간 : '20. 08. 21.(금) ~ 별도해제 시
5. 계도기간
 - (당 초) '20. 08. 21. ~ '20. 10. 12.
 - (연 장) '20. 10. 13. ~ '20. 11. 12.
6. 착용 시설·장소·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1단계 집합제한시설 포함,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 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착용 시설·장소 이외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별표]

7.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8. 마스크 착용법

○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9.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 중 (시행 ‘20.10.13)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10.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11.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관련법의 행정처분의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12. 관련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13.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4.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기 간 : '20. 08. 21.(금) ~ 별도해제 시

다. 계도기간

- (당 초) '20. 08. 21. ~ 10. 12.

- (연 장) '20. 10. 13. ~ 11. 12.

라. 착용 시설장소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1단계 집합제한시설 포함,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착용 시설장소 이외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별표

마.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마스크 착용법

○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사.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 중 (시행 '20.10.13)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아. 발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자.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의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차. 관련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2.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전라남도지사

별표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축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①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잡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전라남도 고시 제2020-440호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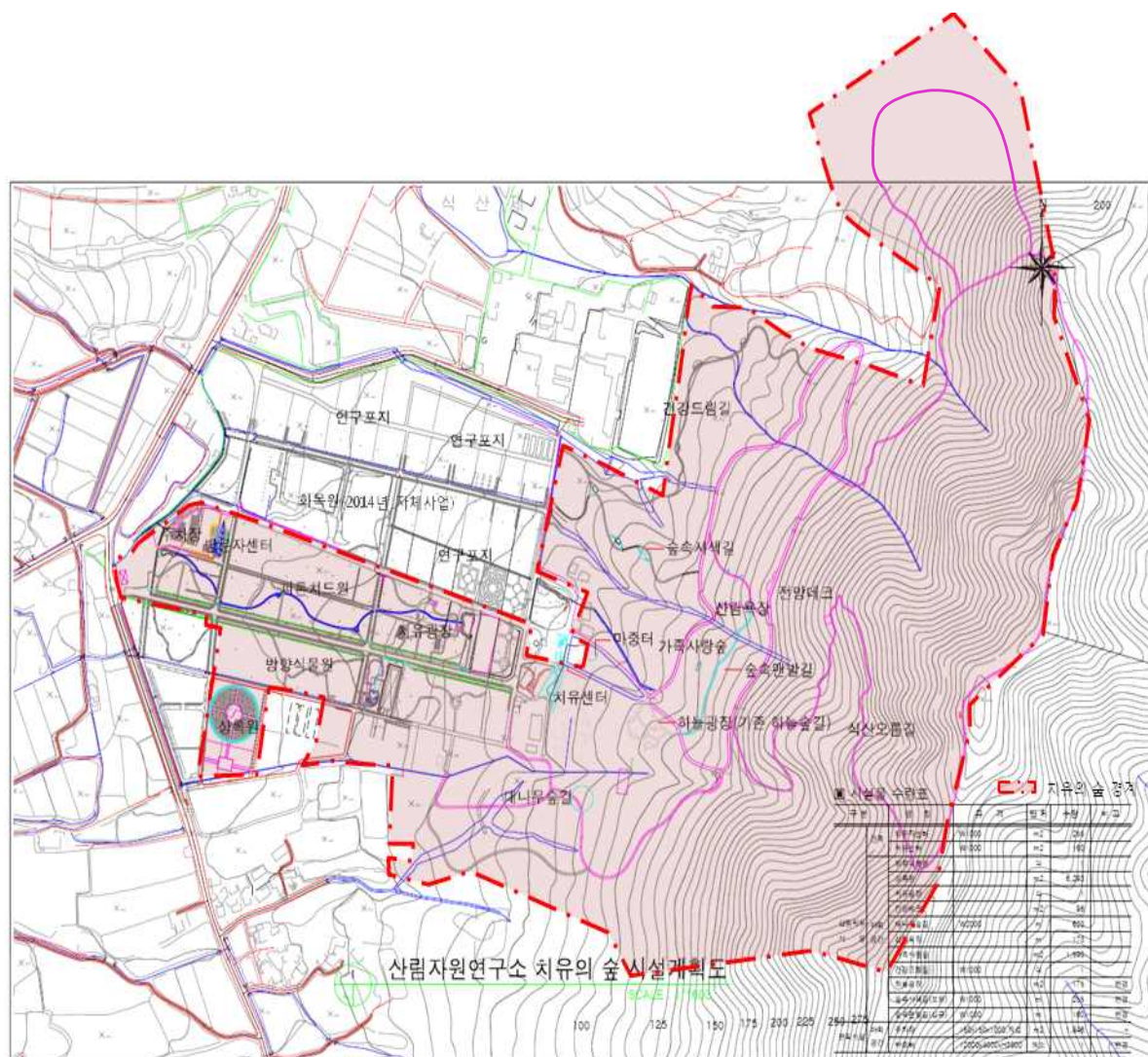
전라남도는 도내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근 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2. 명 칭 : 산림자원연구소 빗가람 치유의 숲
3.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번지 등 22필지 일원
4. 면 적 : 508,097㎡(당초 550,000㎡) ⇒ 감 41,903㎡
5. 사업기간 : 2013. ~ 2018.
6. 사 업 비 : 5,000백만원
7. 치유의 숲 시설내역 : 신규 추가조성 등 변동내역 없음
8. 승인 연월일 : 2020년 10월 13일
9. 시설배치계획도 : 다음

시설배치 계획도



전라남도 고시 제2020-444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70조의2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제15조에서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변경 포함)을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변경) 고시
2. 고 시 일 : 2020. 10. 15
3. 고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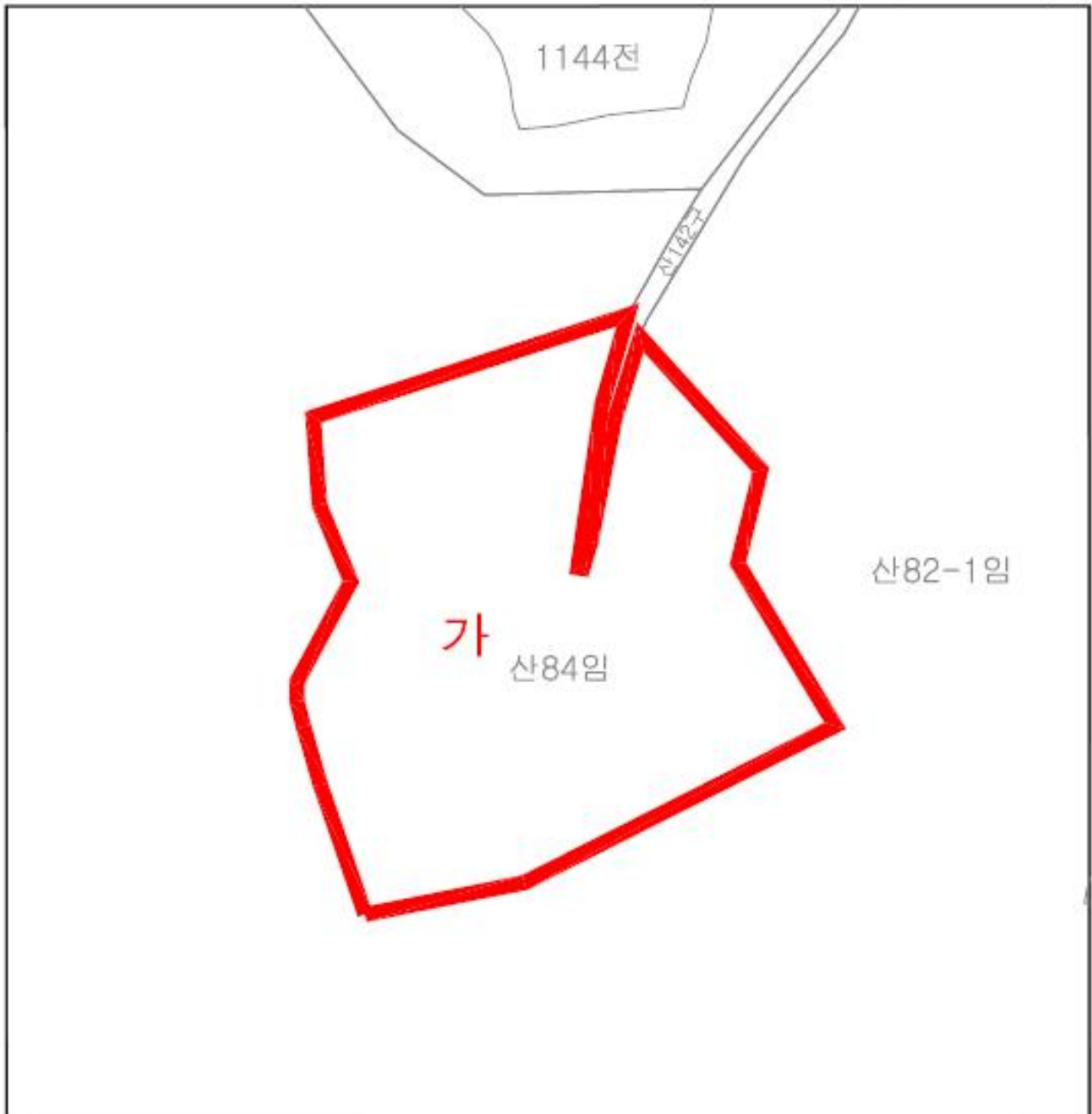
가. 전라남도 기념물 지정

1) 보성 개흥사지(寶城 開興寺址)

- 지정종별 : 전라남도 기념물 제253호
-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84
- 시대/면적 : 고려~조선시대/22,810㎡
- 토지소유자/관리자 : 국유(산림청)
- 지정사유
 -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걸친 절터로 자연지형을 잘 이용한 산지사찰의 공간배치와 정교한 석축 축조방법을 보여주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보존 필요
 - 조선후기 사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많은 자료가 확인되고, 발굴조사에서 금당지 등 중요 유구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 지대
-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 조서(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점유자	
						성 명	주 소
	계			22,810	22,810		
1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84	임	22,810	22,810	국유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정자로 189 1동

○ 지정구역 도면



2) 신안 상태서리 고분군(新安 上台西里 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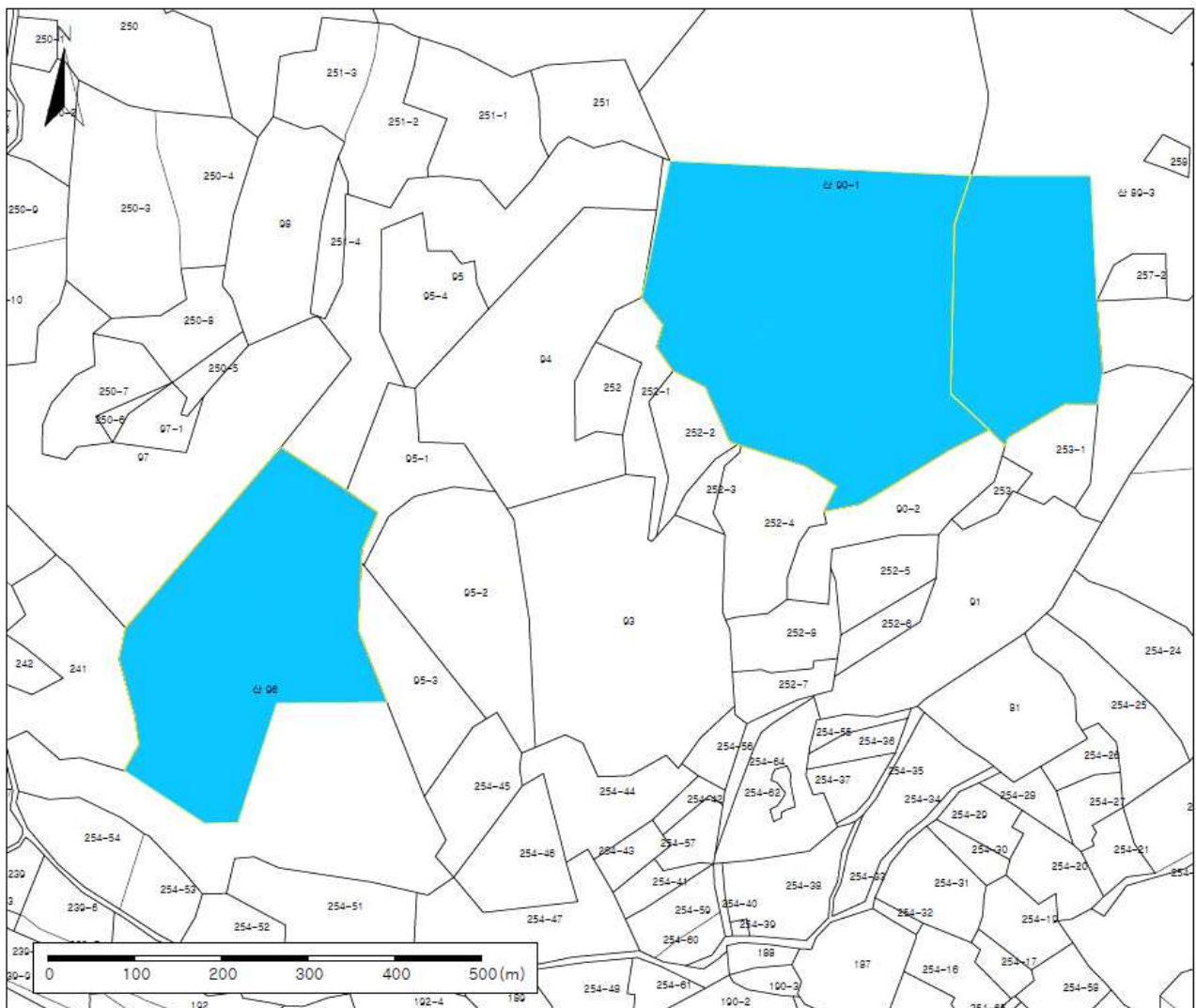
- 지정종별 : 전라남도 기념물 제254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89-3 2필지
- 수량/면적 : 2개군 35기/21,555㎡
- 시대 : 삼국시대
- 토지소유자/관리자 : 공유(신안군), 사유
- 지정사유
 - 6~7세기 조성한 대규모 고분군(2개군 35기)으로 발굴조사 결과 대호·병형토기·직구 소호 등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고, 백제계 석실구조가 다양하게 확인

- 내륙이 아닌 서해와 남해를 잇는 요충지인 도서지역에 분포하여 고대 지방세력, 해양교류사 연구의 중요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여 보존 필요

○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 조서(단위 :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점유자	
						성 명	주 소
	계			47,008	21,555		
1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신89-3	임	20,132	4,160	신안군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2	〃	신90-1	임	14,975	10,310	김옥철 김문담	목포시 양율로 232번길4 (용당동, 종원골든하이츠 603호)
3	〃	신96	임	11,901	7,085	박형봉 박정길 박민철	신안군 신의면 소장길 27-6

○ 지정구역 도면



나.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변경(지정번호) 지정

- 문화재명 : 나주 송재사 나세찬 유묵 목판(羅州 松齋祠 羅世纘 遺墨 木板)
- 당초 지정번호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 변경 지정번호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2호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문평로 103-11(동원리 243)
- 수량/크기 : 목판 24매/가로 43.8cm~53.2cm, 세로 23.5cm~29.7cm
- 시대 : 1927년
- 소유자(관리자) : 금성나씨 청백리공 종중
- 변경 지정사유 : 지정번호 오기에 따른 변경 지정

전라남도 고시 제2020-447호

복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일원에 추진 계획인 “복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복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3. 사업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농업용수 확보 및 관개 개선, 재해예방 등으로 영농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 나. 사업개요
 -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지내
 - 2) 수혜면적 : 13.35ha
 - 3) 총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400백만원)
 - 4) 사업기간 : 2020. 10. ~ 2021. 10.
 - 5) 주요사업
 - 기초처리 : L=77m, 78공
 - 준 설 : 2,102m³(L=35.0m, B=80.0m, H=0.3~1.5m)
 - 보수보강 : 물넘이 A=79.21m²
4. 관련 서류 열람 장소 : 여수시 건설과 (☎061-659-4052)
5. 지구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해당없음

전라남도 고시 제2020-451호

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고시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송공항 다기능수산물위판장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신안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지역경제과(061-240-8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3	시 장	농수산물 공판장	압해읍 송공리 718-64번지 일원	-	증)14,779	14,779	-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장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송공다기능 수산물위판장	- 신설 - A = 14,779㎡	- 신안군 산지수산물의 신속한 양육 및 유통기능 강화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10호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제정 이유

- 명장 선정 절차,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명장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제3조)
- 다. 명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라. 대한민국 명장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마.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중소벤처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라. 의견 제출할 곳

- 1)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2) 전화 : 061-286-3771
- 3) 팩스 : 061-286-4766
- 4) 전자우편 : simply0407@korea.kr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장의 선정 신청)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선정추천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심사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명장 선정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실기·현장심사를 거쳐 전라남도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제4조(명장증서 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명장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기술장려금 지원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100만원씩 5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원계획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이 속한 연도부터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연도의 기술장려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 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조(대한민국 명장과의 관계)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지급 중단된 기술장려금은 다른 전라남도 명장을 집중 육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기록보존)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명장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분야	직종				
	소속	종사기간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국가기술회사 자격	종목 및 등급					
	취득일					
기능경기 입상 경력	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					
특기사항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선정추천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적조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5.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 시 지역 기여 활동계획서 1부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 명장 선정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분야	직종				
소속	종사기간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국가기술훈공	종목 및 등급				
	취득일				
가능경기 입상 경력	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
추천 사유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라남도 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

시장군수

도 소재 기업체의 장

도 소재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장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2)생년월일						
(3)등록기준지			(4)성 별	남, 여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 급						
(10)근무기간	년	개월	(11)추천직종						
(12)공적요지 (100자 이하)									
조 사 자									
(13)소 속			(14)직 위						
(15)직 급			(16)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주요경력			
(17) 경력	(18) 연월일	(19) 경력	(20) 연월일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1) 내용	(22) 연월일	(23) 내용	(24) 연월일
(25) 공 적 사 항			

[별지 제4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소 속)	연 락 처)	
	주 소)		
기관(기업)명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분 야	기 계	직 종	기계조립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000000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현장실사 시 시연 할 숙련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작성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0000호

전라남도 명장

직 종 :

성 명 :

귀하는 도내 산업현장에 오랜기간 종사하여 지역의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전라남
도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0 0 0

직인

[별지 제8호서식]

기술장려금

☐ 지급 중단
☐ 반 환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금액	지급일(기간)
반환(지급중단) 결정액	납기일
사유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전라남도지사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명장 수상자 기록부

연번	분야	직종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성별	비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4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조경공사업 (150184)	수림건설 주식회사 (김○님)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문길 29-9, 제301동제1층제102호 (씨앤에스후레쉬빌3차아파트)	2020. 10. 13.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5호

기본측량 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20년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1. 측량의 종류 : 국가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0. 9. 28. ~ 2021. 1. 5.
4. 측량의 실시지역 : 장성군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사업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17)로 문의 바람.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현황

사업지구	사업기간	수행업체	용역수행 대리인
2차 3권역 장성군	'20. 09. 28 ~ ' 21. 01. 05	우주공간정보 컨소시엄	권순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2020-1- 전라남도- 13호	비금지역아동 센터협회	전남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126-4	김현산	○ 보조프로그램(일반적 보호와 급식) ○ 교육프로그램(학습프로그램 및 어가(특기적성)프로그램, 학습권의 권리보호) ○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문화체험 및 특별활동) ○ 복지(정서지원)프로그램(가정방문, 부모상담, 부모교육, 아동상담 등) ○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학교, 면사무소, 군청, 소방서, 의료기관, 타 복지기관과 연계) ○ 그 밖의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29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건축공사업 (150968)	주식회사 비에스종합건설 (서○우)	전남 여수시 선소로 108 (신기동)	2020. 10. 13.

전라남도 공고 제2020-103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따라 신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현황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제610368호)	주식회사 효경	정효경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2020. 10. 7.	

목포시 공고 제2020-1559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근린공원/목재문화체험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목포시 고시 제2020 - 269호(2020.10.05) 및 목포시 고시 제2020 - 166호(2020.06.18)로 실시 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사업명: 목포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내 달성화장실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0. 15.

목포시장

■ 실시계획(변경) 공고 내용

구분 항 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죽교동 267-2번지 일원(유달근린공원 난전사관 부지)						변경없음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명칭 : 목포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달성화장실44-1) 조성사업						변 경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유달근린공원 결정 면적 : 1,247,993.0㎡ ○ 금회사업 : 달성화장실44-1 조성사업 - 목재문화체험장 : 4,246㎡ / 건축면적 : 558.47㎡, 연면적 : 989.53㎡ (변경없음) - 달성화장실(44-1) / 건축면적 : 54.21㎡, 연면적 : 54.21㎡ (변 경)						변 경
	동 명	층 수	건축면적(㎡)	연면적(㎡)	용 도	구 조	
	화장실	지상1	54.21	54.21	제1종근린생활시설 (화장실)	경량 목구조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 ○ 성명 : 목포시장(공원녹지과장)						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1. 4. 30.						변경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변경없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0.10.15. ~ 10.29.(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						
9. 기타 문의	○ 전화 문의 : 061-270-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270-8344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11,790	4,246					
1	죽교	267-2	대	326	326		목포시			
2	죽교	268	대	73	73		목포시			
3	죽교	269-1	대	63	63		목포시			
4	죽교	269-4	대	241	241		목포시			
5	죽교	269-6	전	671	449		목포시			
6	죽교	189-11	대	139	139		목포시			
7	죽교	191-1	전	620	620		목포시			
8	죽교	267-1	전	68	68		목포시			
9	죽교	267-3	대	2,288	521		목포시			
10	죽교	269-7	전	754	690		목포시			
11	죽교	269-11	대	42	42		목포시			
12	죽교	271-2	대	5,495	883		목포시			
13	죽교	652	구	376	37		국 (국토교통부)			
14	죽교	652-1	구	80	80		국 (기획재정부)			
15	죽교	652-2	구	554	14		국 (국토교통부)			

여수시 고시 제2020-40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문수동 640-5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문수동 OO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 정 : 1,800.5㎡
 - 변 경 : 1,800.3㎡
 - 나. 규 모 : L=130m, B=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디에스종합건설(주) 대표 임홍남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7. 2. 9. ~ 2020.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완료 시에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 귀속됨.
8. 관계도서 : 여수시 도시계획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0-410호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여천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0. 15.

여수시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구 역 별	위 치	면적(㎡)	비 고
여천역 주변지역	여천동 903-10번지 일원	363,688	

나. 제한사유

-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

다.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0-209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가곡동 10-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 실시계획 내용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연장 및 폭	주 소	성 명	
순천시 가곡동 10-1번지 일원	가곡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완충녹지) 사업	계		4,63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북동)	(주)디케이원 [대표 류희석]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도로	대로 2-3호	888㎡ L=191m, B=30-35m			
			소로 1-402호	1,198㎡ L=120m, B=10m			
		완충 녹지	완충녹지 201호	2,54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가. 토지세목조서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원충녹지 201	도시계획도로			총계						
					대로 2-3	소로 1-402	계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내용	
1	8-3	답	51		51	-	51	51		순천시				
2	8-4	답	663		64	96	160	16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3	8-5	답	828			252	252	25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4	9-3	답	723			290	290	29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5	10-1	답	4,608			164	164	16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6	11-5	답	1,536			116	116	11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7	15-2	답	2,038	5	-	-	-	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8	15-3	답	1,137	953				95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9	19-1	답	879	557	75		75	63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10	19-14	답	98	10	88	-	88	98		순천시				
11	19-15	답	4	4	-	-	-	4		순천시				
12	19-9	답	28	1	27	-	27	28		순천시				
13	20	답	1,607	839	-	-	-	83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14	21-2	답	992	13	-	-	-	1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15	23-1	답	2,313	-	-	174	174	17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16	25-1	답	908	-	90	-	90	9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17	25-3	답	162	-	162	-	162	162		순천시				
18	25-4	답	894	-	49	-	49	4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19	26-1	답	866	-	48	-	48	4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다케이원				
20	26-3	답	116	-	116	-	116	116		순천시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원충녹지 201	도시계획도로			총계						
					대로 2-3	소로 1-402	계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내용	
21	26-4	답	198	-	26	-	26	2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디케이원				
22	27-3	답	90	-	80	10	90	9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4(마북동)	주식회사 디케이원				
23	937-12	답	457	162	-	-	-	162		전라남도				
24	938	구	684	-	12	96	108	108		농림축산 식품부				
총 계			21,880	2,544	888	1,198	2,086	4,630						

광양시 고시 제2020-353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에 따라 의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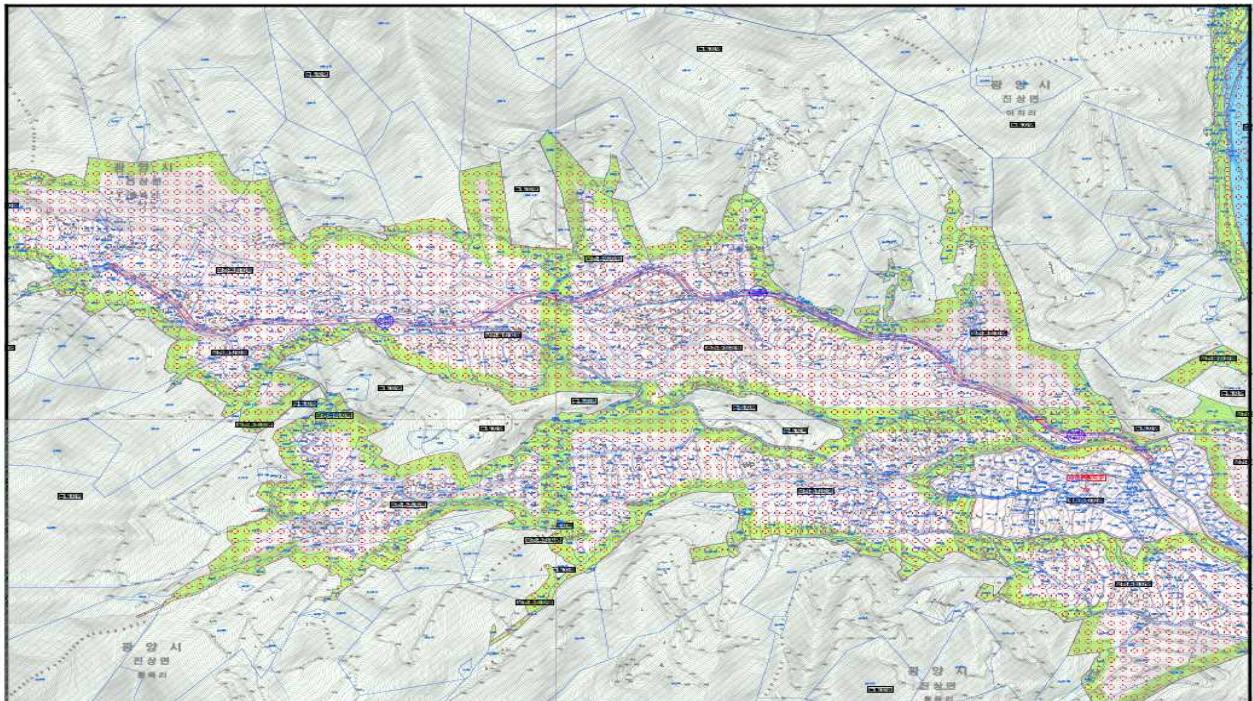
광양시장

1. 지형도면 승인내용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671	6.5m	국지 도로	1,540	황죽리 416번지	황죽리 655번지	일반 도로	-	농어촌도로 202호선

2. 지형도면: 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도로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로과(☎061-797-2825) 및 도시재생과(☎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0-35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5.

광양시장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시설의 종류	면적(㎡)			최 초 결정일
	시설명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시장	6	정기시장	3,588	-	-	2017. 11. 30.
변경	시장	6	정기시장	3,588	감 27㎡	3,561	금회 결정

※ 변경사유: 면적 오류 정정(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2. 지형도면 : 다음

II.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9-3번지 외 1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제6호) 사업

○ 명 칭 : 진상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3,561㎡

○ 규 모

· 건축면적 / 연면적 : 820.92㎡ / 754.12㎡

· 건폐율 / 용적률 : 23.05% / 21.18%

· 층 수 : 지상 1층 (7.7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소 : 광양시장(지역경제장) / 광양시 시청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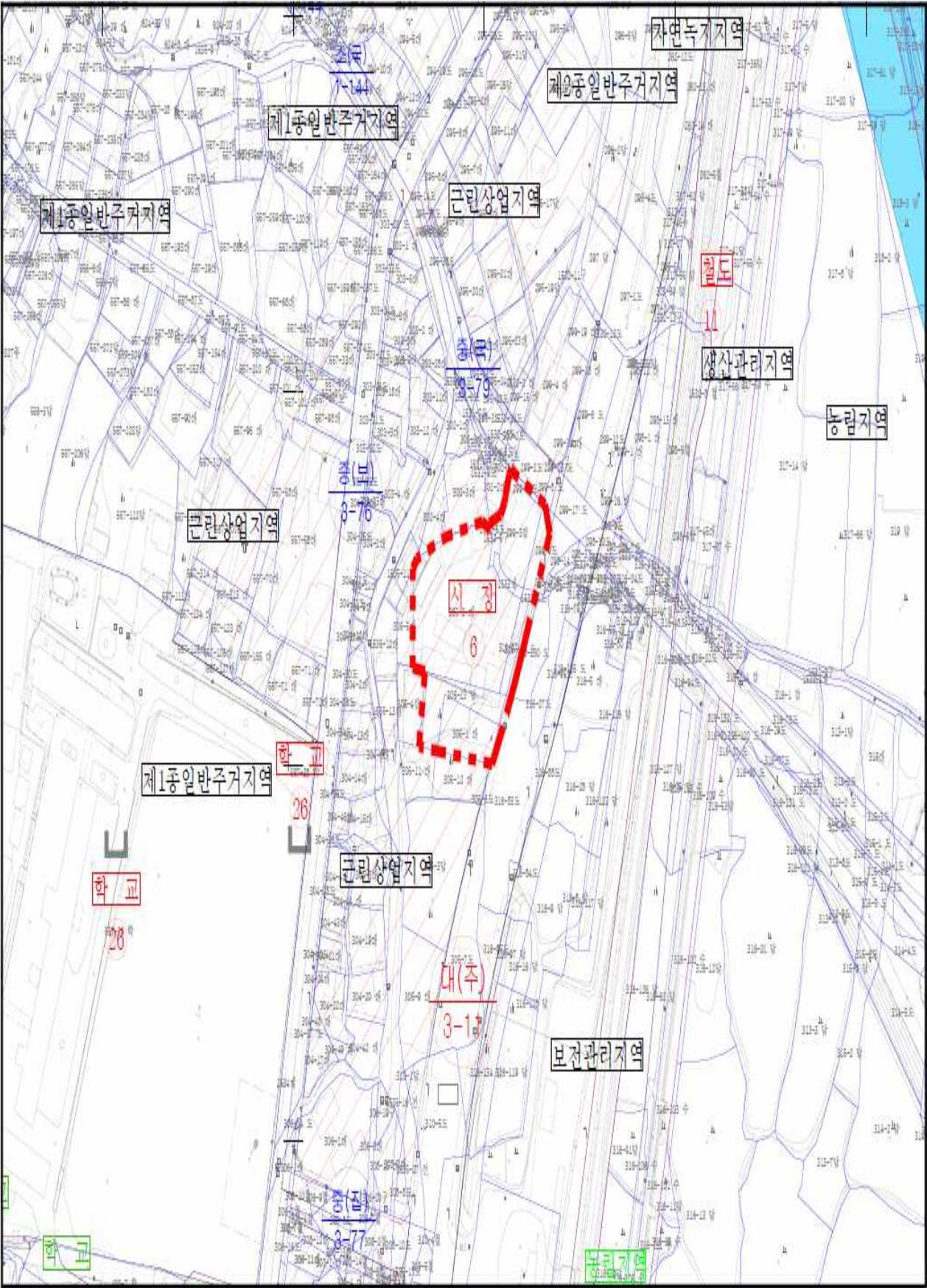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2020. 10. 15. ~ 2021. 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다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및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지역경제과(☎061-797-2359)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여부
합계				3,561	3,561					
1	섬거리	299-3	잡	422	422	광양시				
2	섬거리	299-25	도	88	88	국(국토교통부)				
3	섬거리	299-26	도	30	30	광양시				
4	섬거리	299-27	도	46	46	국(국토교통부)				
5	섬거리	305-1	대	377	377	광양시				
6	섬거리	305-2	잡	1,838	1,838	광양시				
7	섬거리	305-13	답	409	409	광양시				
8	섬거리	316-165	도	179	179	광양시				
9	섬거리	316-166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10	섬거리	1531-5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11	섬거리	1532-5	구	47	47	국(국토교통부)				
12	섬거리	1533	제	55	55	국(기획재정부)				
13	섬거리	1533-5	도	12	12	국(국토교통부)				
14	섬거리	1533-12	도	7	7	국(국토교통부)				

광양시 고시 제2020-356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35호선 등 5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마동 1089-1번지 외 41필지에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35호선 등 5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0. 10. 15.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 정 : 광양시 마동 1089-1번지 외 31필지
- 변 경 : 광양시 마동 1089-1번지 외 4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35호선 등 5개) 사업
- 명 칭 :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규 모				사용형태	연장(m)		폭(m)	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 연장	금회 시행		기정	변경
계								10,166.8	10,154.3
중로	1	135	23.0	국지도로	204	204.0	23.0	4,870.3	4,896.3
중로	2	141	18.5	국지도로	191	95.5	18.5	1,992.8	1,974.3
중로	3	128	12.0	국지도로	388	105.4	12.0	1,644.0	1,627.0
중로	3	130	12.0	국지도로	51	51.0	12.0	673.6	673.8
소로	3	248	6.0	특수도로	154	154.0	6.0	986.1	982.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주식회사 영무건설 대표이사 박재홍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구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 착수 예정일 : 2020. 2. 20.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다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광양시 마동)

○ 중로 1-135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11,619.4	4,896.3	4,870.3	4,896.3			
1	마동	780	780-2	전	41	23	22	23	동광양시	동광양시	
2	마동	626-1	626-12	답	169	4	4	4	하*옥	하*옥	
3	마동	631	631-2	답	197	67	67	67	최*옥	최*옥	
4	마동	1089-1	1089-7	임	2,138.6	1,489	1,487.6	1,489	동광양시	동광양시	
5	마동	1089-1	1089-9	임	2,138.6	188.7	165.6	188.7	동광양시	동광양시	
6	마동	626	626-11	대	549	45	45	45	우*주 동****	우*주 동****	
7	마동	1090	1090-1	도	6,386.2	3,079.6	3,079.1	3,079.6	동광양시	동광양시	

○ 중로 2-141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7,847.6	1,974.3	1,992.8	1,974.3			
1	마동	785	785	전	281	264	264	264	이*길	이*길	
2	마동	785	785-2	전	281	17	17	17	이*길	이*길	
3	마동	786-1	786-4	전	789	34	33	34	이*화 (주)영무건설	이*화 (주)영무건설	
4	마동	786-1	786-5	전	789	349	348	349	이*화 (주)영무건설	이*화 (주)영무건설	
5	마동	787	787	전	122	122	122	122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6	마동	787-1	787-11	전	408	56	56	56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7	마동	787-1	787-12	전	408	344	344	344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8	마동	789	789	전	5	5	5	5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9	마동	790	790	전	9	9	9	9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10	마동	791	791-2	전	118	60	61	60	(주)***산업개발 (주)**건설	(주)***산업개발 (주)**건설	
11	마동	791	791-3	전	118	54	54	54	(주)***산업개발 (주)**건설	(주)***산업개발 (주)**건설	
12	마동	803-1	803-1	전	125	125	125	125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13	마동	984-32	984-32	전	34	34	34	34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4	마동	826-2	826-2	답	129	129	129	129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15	마동	1089-1	1089-8	임	2,138.6	140.3	164.8	140.3	동광양시	동광양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6	마동	786	786-3	대	243	133	132	133	이*화 (주영무건설)	이*화 (주영무건설)	
17	마동	787-2	787-13	도	160	5	-	5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18	마동	787-2	787-14	도	160	18	18	18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19	마동	787-5	787-15	전	495	28	29	28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20	마동	785-1	785-3	전	1,035	48	48	48	이*길 (주영무건설)	이*길 (주영무건설)	

○ 중로 3-128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8,026	1,627	1,644	1,627			
1	마동	신96-14	신96-14	임	180	180	180	180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2	마동	신96-32	신96-32	임	606	606	606	606	(주덕진종합건설	(주덕진종합건설	
3	마동	신96-37	신96-37	임	206	206	206	206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4	마동	산106-14	산106-14	임	80	80	80	80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5	마동	신96-6	신96-51	임	101	8	9	8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6	마동	신96-13	신96-52	임	12	10	10	10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7	마동	산106-15	산106-16	임	5,585	151	165	151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8	마동	산105-10	산105-15	임	906	36	38	36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9	마동	신96-30	신96-30	임	350	350	350	350	김*백 (주영무건설	김*백 (주영무건설	

○ 중로 3-130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8,615.6	673.8	673.6	673.8			
1	미동	1089-1	1089-1	임	2,138.6	320.6	320.6	320.6	동광양시	동광양시	
2	미동	1088	1088-2	도	2,139.7	316.6	317	316.6	동광양시	동광양시	
3	미동	1089	1089-6	임	4,337.3	36.6	36	36.6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 중로 3-248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3,336.3	17,808.6	986.1	982.9			
1	마동	1063	1063	임	16,859.3	16,859.3	33.6	33.6	동광양시	동광양시	
2	마동	1088	1088-1	도	2,139.7	821.6	821.5	821.6	동광양시	동광양시	
3	마동	1089	1089-5	임	4,337.3	127.7	131	127.7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영암군 고시 제2020-143호

영암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432(2020. 10. 15.)호로 결정 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 10. 15.

영암군수

1.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 내용
 - 가. 위 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49-1번지 일원
 - 나. 결정(변경)내용 :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2.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3.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4.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52	반생	자연 취락지구	신북면 월평리 삼포천 남측		20,400	전고 제10호 (2000. 1. 20.)	
변경	52	반생	자연 취락지구	신북면 월평리 삼포천 남측		23,915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2	반생	□ 면적 변경 $A = 20,400m^2 \rightarrow 23,915m^2$	□ 전남형 안심 공동·흡 조성사업에 따른 자연취락지 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토지이용 합리화 도모

영암군 공고 제2020-1483호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779-11번지 일원에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영암군수

1.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 가.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779-11 일원
 - 나. 결정(변경)내용
 - 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변경)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3.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0. 10. 15. ~ 10. 29. (14일간)
 - 나. 공람장소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2020. 10. 29. 18:00 까지)
 -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3	송죽정	자연 취락지구	삼호읍 서호리 3호광장 서측		13,800	2004. 10. 13. (전고-162호)	
변경	43	송죽정	자연 취락지구	삼호읍 서호리 3호광장 서측		61,292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3	송죽정	☐ 면적변경 $A = 13,800m^2 \rightarrow 61,292m^2$ 증) $47,728m^2$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공간과 연계한 농업생산 여건 및 유통 여건 증진을 위하여 취락지구 변경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 안 주민 의견 제출서

의견

의견내용 :

※ 본 의견서는 주민공람공고 기간(2020. 10. 15 ~ 10. 29) 내에 작성·서면제출 바랍니다.

2020. . .

의견제출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 하

영암군 공고 제2020-1484호

영암 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49-1번지 일원에 영암 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영암군수

1.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가. 위 치 : 전남 신북면 월평리 49-1번지 일원

나. 결정(변경)내용

- 군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0. 10. 15. ~ 10. 29. (14일간)

나. 공람장소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2020. 10. 29. 18:00 까지)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사회복지 시 설	신북면 월평리 49-1일원	-	증3,515	3,515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 시 설	□ 신설 A = 3,515㎡ 증) 3,515㎡	□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토지이용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결정

영암 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안 주민 의견 제출서

의견

의견내용 :

※ 본 의견서는 주민공람공고 기간(2020. 10. 15 ~ 10. 29) 내에 작성·서면제출 바랍니다.

2020. . .

의견제출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 하

완도군 고시 제2020-385호

완도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완도군 제2020-91호(2020.03.19)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관련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체육진흥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0. 15.

완도군수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구 분 항 목	고 시 내 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3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사업 명칭 :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8,828㎡ (135,846㎡ 중 금회 증축) ○ 사업규모 - 테니스장 증축(1,756.80㎡)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완도군수 ○ 주소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 준공예정일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다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1	군내리	1124-1	대	2,290	완도군	
2	가용리	38	체	1345	완도군	
3	가용리	39-1	체	803	완도군	
4	가용리	39-3	체	1,795	완도군	
5	가용리	39-4	체	585	완도군	
6	가용리	40	체	1,709	완도군	
7	가용리	41	답	1,554	완도군	
8	가용리	41-1	답	294	완도군	
9	가용리	42	답	1,263	완도군	
10	가용리	43-1	답	979	완도군	
11	가용리	43-2	답	972	완도군	
12	가용리	44	답	2,350	완도군	
13	가용리	45	답	770	완도군	
14	가용리	46	답	1,607	완도군	
15	가용리	47	답	1,739	완도군	
16	가용리	48	답	4,489	완도군	
17	가용리	49	답	2,129	완도군	
18	가용리	50	답	426	완도군	
19	가용리	50-1	유	2,078	완도군	
20	가용리	50-2	체	195	완도군	
21	가용리	50-3	체	159	완도군	
22	가용리	50-4	체	2,093	완도군	
23	가용리	50-5	답	278	완도군	
24	가용리	50-8	답	1,309	완도군	
25	가용리	50-9	체	331	완도군	
26	가용리	50-10	체	744	완도군	
27	가용리	50-11	체	446	완도군	
28	가용리	50-12	체	298	완도군	
29	가용리	50-13	체	1,061	완도군	
30	가용리	50-14	체	909	완도군	
31	가용리	50-15	창	153	완도군	
32	가용리	50-16	체	724	완도군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33	가용리	50-17	체	456	완도군	
34	가용리	50-18	체	919	완도군	
35	가용리	50-19	체	588	완도군	
36	가용리	50-20	체	922	완도군	
37	가용리	50-21	체	1,577	완도군	
38	가용리	50-22	체	529	완도군	
39	가용리	50-23	체	410	완도군	
40	가용리	50-24	체	466	완도군	
41	가용리	50-25	체	377	완도군	
42	가용리	50-26	체	1,716	완도군	
43	가용리	50-27	체	291	완도군	
44	가용리	50-28	체	235	완도군	
45	가용리	50-29	임	255	국(기획재정부)	
46	가용리	50-30	체	1,101	완도군	
47	가용리	50-31	체	35,308	완도군	
48	가용리	50-66	답	126	완도군	
49	가용리	50-67	전	96	완도군	
50	가용리	50-68	체	126	완도군	
51	가용리	50-69	임	179	완도군	
52	가용리	50-75	전	197	완도군	
53	가용리	50-95	도	28	완도군	
54	가용리	50-96	도	479	완도군	
55	가용리	50-97	답	151	완도군	
56	가용리	51-1	체	238	완도군	
57	가용리	51-2	도	155	국(건설교통부)	
58	가용리	51-3	체	63	완도군	
59	가용리	60-7	체	103	완도군	
60	가용리	61	체	1,748	완도군	
61	가용리	62	체	2,036	완도군	
62	가용리	63	체	4,939	완도군	
63	가용리	64-4	체	2,600	완도군	
64	가용리	65-1	체	1,379	완도군	
65	가용리	65-3	도	225	국(건설교통부)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66	가용리	65-4	도	5	완도군	
67	가용리	65-5	도	11	완도군	
68	가용리	66	체	1,782	완도군	
69	가용리	67-1	체	1,977	완도군	
70	가용리	166-2	체	1,758	완도군	
71	가용리	166-3	도	66	완도군	
72	가용리	167	체	2,165	완도군	
73	가용리	167-1	도	162	완도군	
74	가용리	168	체	1,643	완도군	
75	가용리	168-1	도	30	완도군	
76	가용리	169	체	165	완도군	
77	가용리	170	체	1,081	완도군	
78	가용리	171	체	5,035	완도군	
79	가용리	172	체	4,283	완도군	
80	가용리	172-1	도	162	완도군	
81	가용리	172-2	도	36	완도군	
82	가용리	173-3	도	132	완도군	
83	가용리	173-4	도	10	완도군	
84	가용리	177-1	도	139	완도군	
85	가용리	985	구	13,984	국(건설부)	
86	가용리	985-7	체	1,219	완도군	
87	가용리	985-8	구	1,242	국(건설부)	
88	가용리	993	도	5,547	국(건설부)	
89	가용리	193-1	도	5,455	완도군	
90	가용리	50-74	전	109	이정숙(개인)	
91	가용리	50-73	전	66	김성일(개인)	
92	가용리	50-72	전	165	이정숙(개인)	
93	가용리	50-71	전	231	이정숙(개인)	
94	가용리	50-70	전	185	이정숙(개인)	
95	가용리	50-6	답	866	김성일(개인)	
96	군내리	1128	답	634	서성철(개인)	
97	군내리	1128-4	답	463	서성철(개인)	
98	군내리	1127	답	1,398	이정숙(개인)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99	가용리	64-5	도	184	강한철(개인)	
100	가용리	166-1	전	1,564	문진오(개인)	
101	가용리	994	도	298	국(건설부)	
102	가용리	166-4	도	7	완도군	

실시계획 인가조건서

○ 건 명 : 완도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조건사항

1. 건축법 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 협의되는 사항으로 의제에 의한 의제는 협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금번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1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인·허가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료보고서와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시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고, 사업 종료 후 완료 보고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지역개발과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